2023년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추진계획

2023. 1.



국토교통부

목 차

Ⅰ. 사업개요 ····· 1

Ⅱ. 혁신융합캠퍼스 선정 절차 ····· 2

Ⅲ.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····· 6

Ⅳ.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 ····· 7

※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신청서 및 구축계획서(서식)

Ⅰ. 사 업 개 요

□ 목 적

○ 혁신도시 **산학연 연계협력 강화**를 위해 **혁신도시 인근 지역 대학·이전공공기관**을 중심으로 **혁신도시내 혁신융합캠퍼스를** 구축

-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 **상호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**하여 **지역산업 육성** 및 일자리 창출 기여

□ 사업내용

○ 혁신도시 인근의 **지역대학 일부 학과**를 **혁신도시 내로 이전**하여 **융합캠퍼스*** 조성('22~'26, 6개소)

* ①학부과정, ②공공기관 연계 전문대학원, ③계약학과 등

○ (**예산지원**) 혁신융합캠퍼스로 **선정된 대학**에 **4년간 32억원**, 총 6개 대학에 약 190억원 지원(국비·지방비 각각 50%)

* 국비 지원내역 : (1년차) 캠퍼스 구축비 8.2억, (2~4년차)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및 취업·창업비 등 7.6억(2.53억 × 3년)

○ (**추진현황**) '22년에 혁신융합캠퍼스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**2개 대학***을 **사업대상자로 선정**('22.5~9)

* 부산 한국해양대('22.6월), 전남 나주 동신대('22.9월)

□ 2023년 추진계획

○ 2023년 **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수요조사** 실시(1분기)

* 전문대학 등도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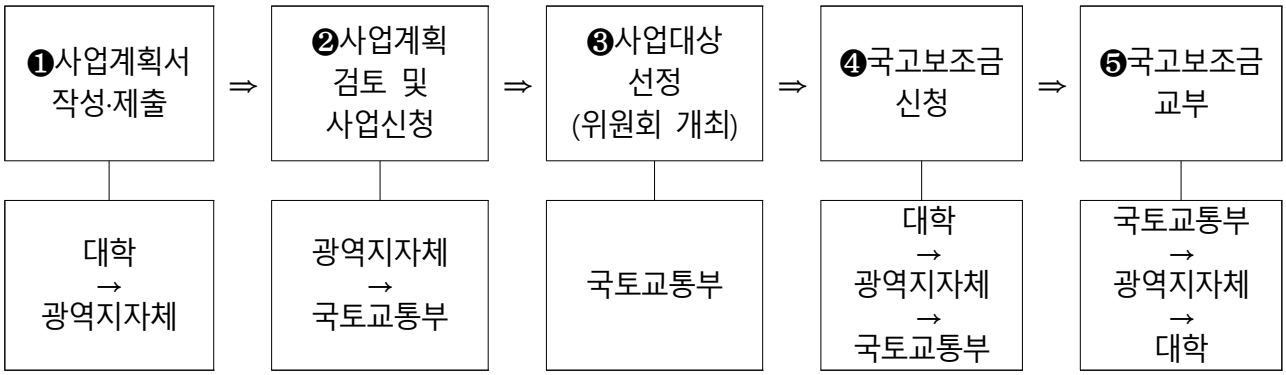
○ '22년 선정된 2개 대학(한국해양대, 동신대)에 운영비 지원

Ⅱ. 혁신융합캠퍼스 선정 절차

□ 신청주체

○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(학교의 설립 등)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[1] (이하 대학)에서 광역시·도에 "혁신융합캠퍼스 구축계획서(붙임 참조)"를 작성·제출하고 광역시·도에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신청

□ 추진절차



□ 신청요건 및 기준

○ **교육 연구여건 확보**

-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연 클러스터의 특성과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・전공・계열간 연계성 구비

○ **위치**

-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조성된 혁신도시 내

○ **교사・교지의 확보**

- **(교사, 교지 면적 및 교원 기준 등)** 「대학설립・운영 규정」 및 교육부교사, 교지 면적 및 교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
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대학, 「사립학교법」에 의한 학교법인 등

- **(소유 또는 임차)** 「대학설립ㆍ운영 규정」에 따른 교사·교지 확보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

- **(안정적 운영 가능성)** 혁신융합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의 장기적 사용 방안 수립

  ㆍ교사ㆍ교지를 임차하여 혁신융합캠퍼스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, 임대차 기간은 계속하여 최소 5년 이상 유지 필요(권고)

  *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2조의5(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)의 임대차 계속 기간 5년을 준용하여 혁신융합 캠퍼스의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계속하여 5년 이상 유지토록 권고

※ 교육부로부터 「고등교육법」 등에 따른 "산업단지캠퍼스"로 승인받거나, 「지방대육성법」에 따른 "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" 지정승인을 받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캠퍼스 설립(변경)인가를 받아 혁신도시내에서 캠퍼스 구축·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내용 및 실제 캠퍼스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교사·교지·교원 등에 대한 확보계획을 제시하여야 함

ㅇ 교육과정 운영(권고)

-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(Capstone Design)를 필수 교과목 또는 졸업요건에 포함

- 선취업·후진학제도, 산학협력 석·박사과정(전문대학 제외)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

ㅇ 기업지원 활성화

- 산업체로의 기술이전, 산업자문,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등 산업체와 상호 협력 및 학생들의 지역 내 산업체 취업을 위한 노력

□ 혁신융합캠퍼스 선정 주요 검토 사항

※ 교육부로부터 『고등교육법』에 의한 “산업단지 캠퍼스“ 승인 또는 타 법령에 의해 혁신도시 구역 내 “학교의 변경인가(위치)승인”을 득한 경우에는 ❶,❺,❻,❼ 항목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

❶	이전위치 적정성(「대학설립 · 운영 규정 」 제2조)

○ 이전할 위치가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도시 내 지역 여부

❷	교육연구 여건 확보 적정성

○ 혁신융합캠퍼스의 특성과 이전 학과의 연관성 여부
○ 캠퍼스의 장기적 사용 가능 여부

❸	산학협력 친화형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여부 (권고)

○ 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자 우대제도 실시 계획 여부
○ 교원 승진 · 승급 및 재임용시 산학협력 요소 반영 계획 여부
○ 교육과정에 현장실습학점제 및 창의적 종합설계(Capstone Design)를 필수과목으로 포함
○ 선취업·후진학제도, 산학협력 석·박사과정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 편성·운영 계획이 있는지 여부
○ 학내의견 수렴(교직원 및 학생 등)
○ 대학 이사회(교무회의) 의결

❹	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

○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목표와 전략 및 추진방안 적합성
○ 실행가능한 운영체계 구성 및 연도별 운영 전략 수립
○ 이전 경비와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

❺	교원확보계획의 타당성 · 실현가능성(권고)

ㅇ 혁신융합 캠퍼스 설립 인가 신청 시까지 편제완성 정원 기준법정 교원수의 1/2이상을 충족하고, 혁신융합 캠퍼스 개교예정일 전까지 학생 정원기준에 따른 법정 교원 수 이상 충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

❻	교지확보계획의 타당성 · 실현가능성

<인정 유형>

ㅇ 대학이 토지 소유권을 이미 확보한 경우
ㅇ 대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가능 재원을 제시하는 경우
ㅇ 대학이 토지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
ㅇ 개인이 자기 소유 토지를 대학에 출연하겠다고 약정한 경우
ㅇ 개인이 자기 부담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대학에 출연하겠다고 약정한 경우
ㅇ 기타 교지확보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

❼	교사확보계획의 타당성 · 실현가능성

<인정 유형>

ㅇ 신축 시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평면도 및 예상 건축비 산정자료를 제출하고 건축재원을 증빙하는 경우
ㅇ 기존 건물을 매입 · 분양 · 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사용 계획인 경우에는 건물매매계약서 · 분양계약서 ·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를 제시하고 해당 비용 확보 방안 제출
ㅇ 건물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건물 출연약정서 제출
ㅇ 건물을 기부받고 리모델링 후 사용 계획인 경우에는 건물 출연약정서 및 리모델링 비용 산정 및 확보 방안 제출
ㅇ 기타 교사확보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

Ⅲ. 혁신융합캠퍼스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

□ 심사위원회 구성 · 운영

※ 구성 및 심의내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함

○ 위원회는 교육, 교육행정, 교육연구 분야 및 산업계, 혁신도시 분야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(7명 이상)

○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(在籍委員)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

○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

□ 심사방법

○ 신청 대학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평가 후 사업대상 선정

① 평가 준비	② 서류심사	③ 현장확인	④ 최종 선정
■ 신청서 검토, 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한 행정 준비 등	■ 평가 착안점 정리, 심사에 필요한 세부절차 확정 등 ■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확인 등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	■ 심사대상 대학 확인 및 설명 청취, 현장여건 확인 등	■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혁신융합캠퍼스 사업대상 선정
■ 국토부	■ 심사위원	■ 심사위원	■ 심사위원

□ 심의사항

○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 대학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

○ 혁신융합 캠퍼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

○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Ⅳ.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

1 사업비 및 연도별 지원내용

○ 혁신융합캠퍼스 지원예산(1캠퍼스, ‘23년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
국비	**1,577.6**	818.6	253	253	253
지방비	**1,577.6**	818.6	253	253	253
계	**3,155.2**	**1,637.2**	**506**	**506**	**506**

※ 실제 지원금액은 기재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연도별 지원내용

가. 1차년도 : 구축비

- 시설공사비 : 약 1,637백만원 / 1캠퍼스 / 1년간 = 국 + 지

① 캠퍼스 구축비 : 전공강의실, 가상화빅데이터실, 오픈랩&전용실습실, 세미나실, 교수공동연구실, 공동사무실 등

② 캠퍼스 실습장비 구입비 : 각종 오픈랩 장비, 학과별 실습장비, 공공기관 연관산업 실습장비 등

나. 2~4차년도 지원내용 : 운영비

- 운영비 : 약 1,518백만원 / 1캠퍼스 / 3년간 = 국 + 지

① 유지보수비 : 1차년도 구축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

② 산학연 프로젝트 운영(연구개발비, 재료비 등) : 캡스톤 디자인, 오픈랩 프로젝트 등

③ 취·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: 교육컨텐츠 개발비, 강사료, 영상 촬영비 등

④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

* 혁신융합캠퍼스 운영을 위한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 지원

* ①, ② 항목 모두 대규모 투자유치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초과하여 집행 가능

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

□ 지원 절차 흐름도

① 보조금 지원 신청	→	② 보조금 지원 적정성 검토	→	③ 심사 및 지원 (결정) 통지	→	④ 보조금 지급
보조금 신청 (공사비, 임차료 취·창업비 등)		서면검토, 현장방문 심사 등 적정성 검토 ※ 필요시 『혁신도시발전위원회』 또는 『상생발전 협의회』심의·의결		심사결과 통보		보조금 지급
신청대학 → 시·도		지자체 검토 : 시·도 국토부 검토 : 심사		국토부 → 지자체 → 신청 대학		국토부 → 지자체 → 신청 대학

□ 지원 절차

① 보조금 지원 신청 (대학 ⇨ 광역시·도)

○ 혁신융합캠퍼스로 선정된 대학에서 광역지자체로 보조금 지원 신청

② 보조금 지원 적정성 검토(광역시·도)

○ 광역지자체는 대학에서 신청한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로 국고보조금 신청

③ 보조금 지원 심사 및 결정(국토부)

○ 광역지자체로부터 신청된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 심사 및 지원 결정

④ 국고보조금 교부(국토부 ⇨ 광역지자체 ⇨ 대학)

○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이후 지자체는 매칭 지방비를 합산하여 대학에 교부

◀ 보조금 지원 검토 시 유의사항 ▶

► 기존에 지자체별로 지원된 각종「산학연클러스터」투자유치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(집행) 되지 않도록 관리
- 동일 항목, 성격의 예산 (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이자 등) 지원 불가

※ 지원예산 부족시 아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

《 지원예산 부족시 우선순위 검토기준 》

우선순위	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
1순위	구축 대상 캠퍼스의 학생 수가 많은 캠퍼스
2순위	구축 대상 캠퍼스의 수여학위와 계약학과 수가 많은 캠퍼스
3순위	기타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※ 지자체별 혁신도시 및 주변 여건 등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기준 변경 가능

붙임 **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 신청서**

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신청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신 청 인</td><td>① 대 학 명 칭</td><td colspan="8">(○○대학교)</td></tr>
<tr><td>② 소 재 지</td><td colspan="8">도로명</td></tr>
<tr><td>③ 전 화 번 호</td><td colspan="8">대표 / 담당부서명, 연락처</td></tr>
<tr><td>④ 대 표 자</td><td colspan="8">이사장 : / 총장 :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신청내용</td><td>⑤ 캠 퍼 스 명 칭</td><td colspan="8">신청대상</td></tr>
<tr><td>⑥ 소 재 지</td><td colspan="8">도로명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⑦ 신청(이전)대상</td><td rowspan="2">학 과</td><td colspan="4">교원(명)</td><td colspan="2">학생
(입학/편제정원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전임</td><td rowspan="2">겸임
초빙</td><td rowspan="2">합계</td><td>대학</td><td>대학원</td></tr>
<tr><td>상근</td><td>비상근</td><td>소계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/</td><td>/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/</td><td>/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/</td><td>/</td></tr>
<tr><td>합 계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/</td><td>/</td></tr>
<tr><td>⑧ 설립 · 운영예정일</td><td colspan="8">년 월 일</td></tr>
</table>

「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추진계획」에 의하여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의 장 **직 인**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※ 붙임 :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계획서 1부

○○혁신융합캠퍼스 구축 계획서

신청기관명

○○혁신융합캠퍼스 구축 계획서

<목 차>

Ⅰ. 혁신융합 캠퍼스의 필요성

1. 대학 개요

가. 본교 현황

나. 혁신융합 캠퍼스 개요

2. 계열 · 학과 · 전공의 이전 필요성

3. 혁신도시와 혁신융합 캠퍼스와의 연관성

Ⅱ.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계획

1. 구축 목표

2. 구축 전략 및 추진 방안

가. 교원 · 교지 · 교사 확보 계획

나. 교사시설 용도별 구성

다. 교육환경평가 결과

Ⅲ. 혁신융합 캠퍼스 운영 계획

1. 운영 전략 및 추진 방안

가. 운영 체계 및 역할

나. 연도별 운영 전략 및 추진 방안

다.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 포함 내용

라. 산학협력 친화형 시스템 구축 내용

2. 기대효과

Ⅳ. 혁신융합 캠퍼스 투자 계획

1. 이전 경비 조달 계획

2. 자금조달 계획

붙임 : 증빙자료

Ⅰ. 혁신융합캠퍼스 필요성

1. 대학 개요

가. 본교 현황

○ 본교 위치 :

○ 규모

(기준 : 최근 정보공시자료)

구 분	교지(㎡) (기준면적)	교사(㎡) (기준면적)	계열별	교원			학생 (입학/편제정원)	
				전임	겸임 초빙	합계	대학	대학원
OO캠퍼스	( )	( )					/	/
							/	/
							/	/
			합계				/	/

ㅇ 교지·교사 면적 란 중 기준면적은 ( )로 표기,
기준면적은 「대학설립 운영,규정」에서 정해진 사항

나. 혁신융합 캠퍼스 개요

○ 입지여건

- 입지 장점, 단점 극복방안 등

ㅇ 본교, 혁신융합 및 혁신융합 캠퍼스를 각각 이격 거리와 함께 도상에 표현 가능하며
- 별지 첨부된 “위치도 및 전경사진” 서식으로 제출 가능

○ 혁신융합 캠퍼스 위치

구 분	지 번	혁신도시 구역		산학연 클러스터 구역	
		내	외	내	외
위 치		○		○	

○ 이전 시기 :

- 절차 진행 중이면 간략한 추진경과와 예정 프로세스 기재

○ 이전대상 및 규모

(기준 : 최근 정보공시자료)

구 분	학과	교원 (명)					학생 (명) (입학/편제정원)	
		전임			겸임 초빙	합계	대학	대학원
		상근	비상근	소계				
OO캠퍼스							/	/
							/	/
							/	/
	합계						/	/

ㅇ 이전 대상 학과(학년)의 편제 정원을 기준으로 교지·교사 기준면적 기재

ㅇ 상근은 전임교원 중 교수연구실을 본교에서 혁신융합 캠퍼스로 이전하는 교원

2. 계열 · 학과 · 전공의 이전 필요성

○

○

○

3. 혁신도시와 혁신융합 캠퍼스와의 연관성

○

○

○

ㅇ 혁신도시 일반 현황, 산업집적도 분석 및 혁신융합 캠퍼스와의 연관성 기재

II.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계획

1. 구축 목표

○

○

○

ㅇ 설립 목표(도표나 도식, 서술), OO학과 운영 계획(도표나 도식, 서술)
* 본교 교양 및 기초전공(이론) - 혁신융합 캠퍼스 심화전공(실습 포함) - 연구개발, Capstone Design, 졸업작품, 인턴쉽 및 현장실습 포함한 학과 운영 계획

2. 구축 전략 및 추진 방안

※ 위 “신청요건 및 기준”에서 명시된 “교육부 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” 아래 “가”항목에 대해서는 승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

가. 교원 · 교지 · 교사 확보 계획

1) 교원확보계획

(기준 : 확보현황은 최근 정보공시자료)

구분	참여교원(명)											
	OO학과				OO학과				OO학과			
	전임		겸임초빙	소계	전임		겸임초빙	소계	전임		겸임초빙	소계
	상근	비상근			상근	비상근			상근	비상근		
법정정원(명,A)												
현원(명,B)												
(산업체경력)	( )		( )	( )	( )		( )	( )	( )		( )	( )
확보율(%,B/A)												

ㅇ 법정정원, 현원, 산업체 경력 교원은 이전하는 학과(학년)의 편제정원 비율로 산출
ㅇ 겸임·초빙교원은 주당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인원을 기재하며, 산업체 경력은 3년 이상
- 전체 겸임·초빙교원 수업시수를 합산하여 9로 나누며,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
ㅇ 설립 인가 신청 시까지 편제완성 정원 기준 법정 교원 수의 1/2이상을 충족하고, 혁신융합 캠퍼스 개교 예정일 전까지 학생 정원기준에 따른 법정 교원 수 이상 충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
- 편제완성년도 전까지 확보해야하는 교원에는 전임교원 외에도 겸임교원 등 포함 가능(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제6조제4항,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 시행규칙」제9조)

2) 교지 및 교사 확보 계획

① 혁신융합 캠퍼스 조감도

- 간략설명자료

ㅇ 혁신융합 캠퍼스 조감도(도식), 교육용 기본시설 및 주요시설 등 표기

② 확보 계획

○ 교지

계열별	학과	학생 정원 (명)	확보 현황			소유 현황		
			기준 (㎡)	확보 (㎡)	확보율 (%)	설립주체 소유	공동소유	임차
OO계열	OO학과							
	OO학과							
	소계							
OO계열	OO학과							
	OO학과							
	소계							
합계								

○ 교사

계열별	학과	학생 정원 (명)	확보 현황			소유 현황		
			기준 (㎡)	확보 (㎡)	확보율 (%)	설립주체 소유	공동소유	임차
OO계열	OO학과							
	OO학과							
	소계							
OO계열	OO학과					○		
	OO학과							
	소계							
합계								

③ 안정화 방안

-

ㅇ 교사·교지를 임차하여 혁신융합 캠퍼스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,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 유지 필요

나. 교사시설 용도별 구성 계획

구 분			면적(㎡)	실수	비고
교육기본시설	강의실				
	…				
지원시설	체육관				
	…				
연구시설	일반	연구용실험실			
		…			
	산학	산학융합연구실			
		Business Lab.			
		Information Center			
		기타			
부속시설	공통	박물관 등			

* 교육기본시설, 지원시설, 연구시설의 구분은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제1항 별표2에 의함

Ⅲ. 혁신융합 캠퍼스 운영 계획

1. 운영 전략 및 추진 방안

가. 운영 체계 및 역할

○

○

○

ㅇ 추진체계(도표 및 그림 가능), 혁신융합 캠퍼스 운영 조직 및 역할 기재

나. 연도별 운영 전략 및 추진 방안

○

○

○

ㅇ 연도별 운영 전략 및 추진 방안
*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추진 내용 기재, 본교와 혁신융합 캠퍼스간의 역할 분담

다.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 반영 내용

○

○

○

라. 산학협력 친화형 시스템 구축 내용

○

○

○

○

2. 기대효과

○

○

○

ㅇ 지역발전 및 혁신융합 캠퍼스와의 연계성 및 효율성
ㅇ 실 취업 가능성 및 파급효과
ㅇ 현장적합형 산업인력 및 연구인력 양성 가능성, 고용 및 취업 촉진 정도 등
ㅇ R&D 등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가능성

Ⅳ. 혁신융합캠퍼스 투자계획

구분	운영주체	종류	학과명	교과과정	수여학위	학생 수 (입학,이전)
계	개 대학교		개 학과	개 과정	개 학위	명
1	소계		개 학과	개 과정	개 학위	명
	○○대학교	신설				
		계약		융합전자공학		학부( )명, 대학원( )명
		이전 등		이차전지		
2	소계		개 학과	개 과정	개 학위	명
	△△대학교	신설				
		계약				
		이전 등				

○ 총괄예산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운영주체	합계	지 원 년 도			
			1차	2차	3차	4차
계	개 대학교					
1	○○대학교					
2	△△대학교					

○ 상세예산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예 산 항 목			
		건축시설 공사	임차료	장비구입	취,창업지원 등
계					
○○대학교	소계				
1차 년도					
2차 년도		-			
3차 년도		-			
4차 년도		-			
△△대학교	소계				
1차 년도					
2차 년도		-			
3차 년도		-			
4차 년도		-			

※ 예산항목의 소계는 세부예산의 항목별 소계와 일치하여야 함

○ 세부예산

※ 금액단위 유의

구 분		예 산 항 목			
		금액(백만원) A=B*C	규격	수량 B	단가(천원) C
합 계					
○○대학교	누계				
1차 년도	계				
	건축시설공사	소계			
	시설, 장비구입	소계			
2차 년도	계				
	임차료				
	취,창업지원				
3차 년도	계				
	임차료				
	취,창업지원				
4차 년도	계				
	임차료				
	취,창업지원				
△△대학교	누계	이하 계속			

※ 건축시설공사, 시설 및 장비구입의 내역이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가능

붙임 1. 교사 및 교지 확보 관련 증빙 부대서류

① 교지 · 교사 매입(임대차)계약서-임대차 계약의 경우

② 건축(리모델링)계획 간략 설계도면

③ 건축물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원, 건축물 등기부등본

④ 계획평면도 (리모델링 경우 - 기존 건축물과 계획을 색으로 구분 표기)

⑤ 기타 자금조달 관련 증빙자료 등

2.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(권고)
3. 교무회의 회의록 사본 (권고)
4. 이전학과 교수 및 학생 동의서 (권고)
5. 교원인사규정, 교원업적평가 규정 등 산학협력 교원인사체제 관련 자료 (권고)
6. 교원확보 계획 관련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(권고)
7. 교육과정 개편 관련 자료 (권고)